

K-산업보건

사업장에 휴게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?

사업장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. 저희는 노동자 수가 작은 사업장인데,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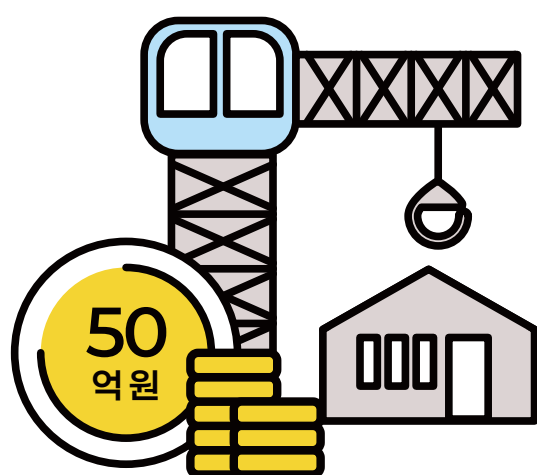
휴게시설 설치 의무 확대

2023년 8월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.
 이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
기존



상시근로자 **50명**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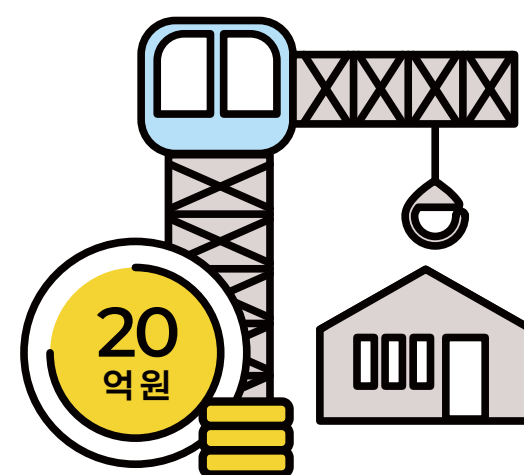


건설업 총 공사금액
50억 원 이상 사업장

변경



상시근로자 **20명** 이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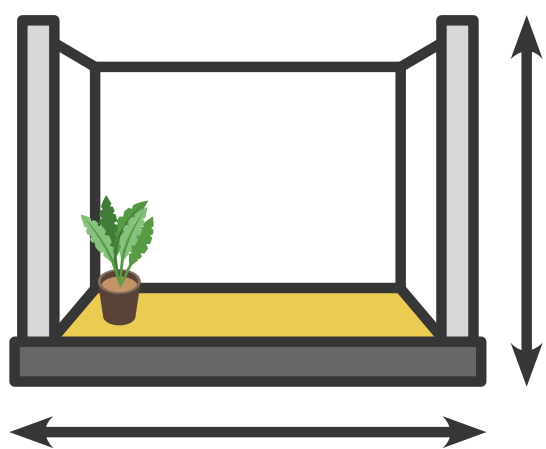
건설업 총 공사금액
20억 원 이상 사업장



단, 10명 이상~20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콜센터 상담원, 돌봄서비스 종사자, 배달원, 청소·경비원 등 7개 직종이 2명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.

휴게시설 설치 기준

휴게시설은 바닥면적 6㎡ 이상, 높이 2.1m 이상이어야 하며, 세부 면적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.



휴게시설은 최소 바닥 면적이 6㎡ 이상이어야 하며,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.1m 이상



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 왕복 이동 시간은 휴식시간의 20%를 넘지 않은 곳에 위치



휴식을 방해할 수 있는 흡연실이나 비품 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미인정

휴게시설 위반 시 과태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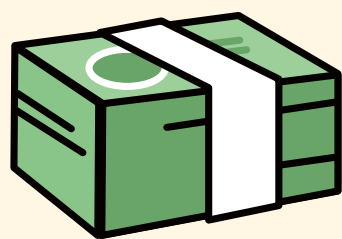
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임에도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,
휴게시설 설치·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
✓ 휴게시설 미설치

위반 횟수 관계없이
1,500만 원 과태료

✓ 설치·관리 미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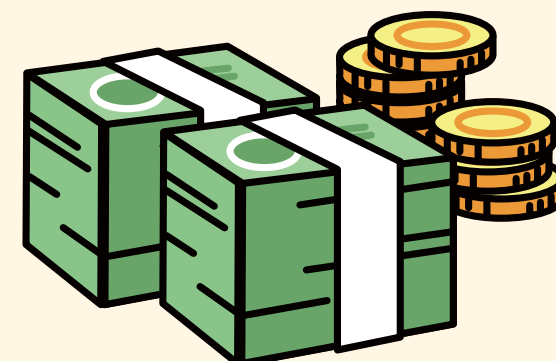
1차 위반
50만 원



2차 위반
250만 원



3차 위반
500만 원



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시 지켜야 할 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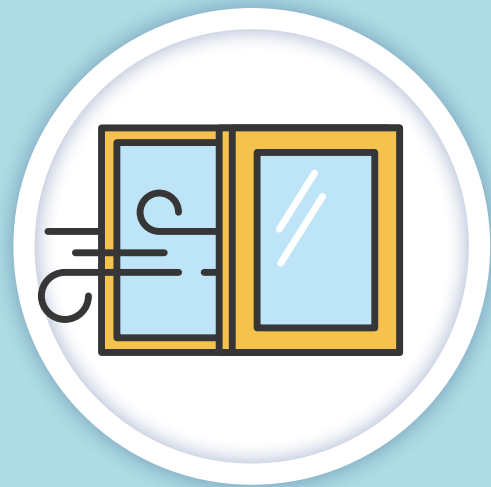
적정한 온도 유지
(18 ~ 28℃)



적정한 습도 유지
(50 ~ 55%)



적정한 밝기 유지
(100 ~ 200룩스)



창문 등을 통하여
환기 가능



의자 등 휴식에
필요한 비품 구비



마실 수 있는 물이나
식수 설비 필수



휴게시설의 청소·관리 등
담당자 지정 필수



휴게시설 표지
외부에 부착



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
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